

제 1263 호

1987. 6. 11

공정인 : 서울특별시청 열 모 관
공정인 : 공 보 관 김 성
관 호 : 731-0311-3
안 호 : 서울특별시 불합발간심
관 호 : 735-3337

신	경	공	보	관					
장	관	103							
차	관	김	성	기					

차 례

- ◎ 공문시험
불합발간심판소요조치 3
- ◎ 조 례
제 2188 호 : 서울특별시 의원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 8
제 2189 호 : 서울특별시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 9
제 2190 호 : 서울특별시 하천정용로동경수조례중개정조례 13
- ◎ 규 칙
제 2181 호 :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7

(이런계속)

공									
관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㉔	교 시	
	제 398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	18
	제 400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	18
㉕	공 고	
	제 376 호 : 도시계획 (안) 공람	19
	제 377 호 : 제 2 종전기공사면허실효	19
㉖	구 공 고	
	도봉구제 237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내소극장) 완료	20
	강남구제 86 호 : 편입학교부	20
㉗	사 렌	

공 문 시 형

서울특별시

총무 01754-757

(731-6215)

1987.6.11

수신처:수신처참조

(3년)

제목:물품관리 전환소요조치

1. 양사에서 사용하던 S/T교환기가 전지식 교환기로 교체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별칭 활용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니 소요회망부서에서는 '87.6.30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람
2. 위 기간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으면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음.

물 품 목 록 표

정부물품분류번호	품 명	규 격	단위	수량	취득년월일	상태	사 유
5805-006-0060	자동교환기	S/T 600 회선	식	1	1960.3	중고	장비교체
5805-003	정 류 기	50 A	대	2	"	"	"
6140-001-1107	빛 메 리	2V500AH	개	24	"	"	"
6625-229-0018	값이시험대	AP-2	대	2	"	"	"

서울특별시 장

총무과장 정경

수신처:시상화전기관

서 울 특 별 시

종민 01254-148

(366)

1987.6.11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계 목 : 물품관리 전환소요조치

당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요자하니 외
당부서에서는 '87.6.20 까지 종합민원실장 참조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랍.

관리전환대상물품명세서

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복사용 현상액 (토 너)	7510-078-2001 신도리로 제품	조	15	

서 울 특 별 시 장

종합민원실장 참조

수신처 : 서산하전기관

서 울 특 별 시

회계 01754-687

(731-6251)

1987. 6. 11

수신 산하전기국장

제목 물품관리전화 소요조회

1. 본청 각실과에서 사용하지 않은 선종기(병방시설로 인한 불용)를 산하기관에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계획이니 별첨 선종기 현황을 참조하여 소요기준은 신규구매를 억제하고 소요량을 선종기 보유실과에 우선으로 관리전환 여부를 확인한후 서면으로 관리전환요구서를 '87.6.25 일한 선종기 보유실과에 제출할것. (단, 특별회계 소속물품은 동일특별회계 기관간에만 관리전환가능)

첨부: 선종기 현황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사무국장직권)

활 용 선 종 기 현 행

(본청영방청사 보유선종기 111대, 편리전환대상선종기 83대) '87.6.1 현재

물품분류 번 호	품 명	규 격	단위	수량	취 득 년 월 일	장 부 가 액 원	물 품 상 태	회계명	물 품 사 유	물품소재지
4140-001 -2030	선종기	FD-354 (원십)	대	1	75. 6.30	13,425	중 고	일반	냉방기 설치	기뢰담당관
4140-001 -2035	"	13'	"	4	미 상	116,000	"	"	"	실사분석 담당관
"	"	14'	"	2	81.11. 9	40,500	요정비	"	"	투자관리 담당관
"	"	신일SIF 405FA	"	1	83. 7. 1	39,000	중 고	"	"	올림픽 관람담당관
"	"	신일SIF 368TMO	"	1	"	39,000	"	"	"	"
"	"	금성FD 3545	"	2	82. 8.31	63,200	"	"	"	의 전 과
"	"	금성FD 3518	"	1	83. 6.30	25,000	"	"	"	"
"	"		"	6	미 상	138,000	"	"	"	인 사 과
"	"	금성구형 3단	"	1	71. 8.23	18,500	요정비	"	"	시 밀 과
"	"	16'	"	4	미 상	48,000	중 고	"	"	췌장 도 과
"	"	H-3581	"	1	"	26,500	"	"	"	세 정 과
"	"	대원DF 3584	"	1	"	26,000	"	"	"	"
"	"	금성FD -354	"	1	83.11.22	26,000	"	"	"	"
"	"		"	5	82.10.31	16,940	"	"	"	세 무 지 도 과

물품분류 번 호	품명	규 격	단위	수량	위 특 년월일	장 부 가액	물품 상태	외국 취득	물용 사용	물품소재지
4140-001 -2020	선동기	신일SIF- 632SK	대	1	미 상	20,000	중고	일반	농업기 설치	완 전 과
"	"	-3603 T	"	1	82. 3. 25	22,000	"	"	"	"
"	"	-36 IVS	"	1	"	22,000	"	"	"	"
"	"	금성 FD -35HB	"	1	"	22,000	"	"	"	"
"	"	14 "	"	2	미 상	26,000	요청비	"	"	보전 취합 과
"	"	"	"	4	"	62,160	중고	"	"	의 약 과
4140-001 -2030	"	스탠드형 30cm	"	1	81. 8. 7	25,000	"	"	"	복 지 과
"	"	"	"	2	80. 7. 10	30,000	"	"	"	"
-2035	"	35cm	"	1	81. 8. 7	25,000	"	"	"	"
"	"	12 "	"	1	미 상	15,000	요청비	"	"	상 공 과
"	"	14 "	"	4	"	60,000	"	"	"	"
"	"	스탠드형	"	4	83.	46,000	중고	"	"	농 축 과
"	"	스탠드형	"	2	미 상	50,000	"	토지구 획득 회계	"	구획정리과
"	"	FD-356 MB	"	3	"	105,000	"	일 반	"	재개반과
-2030	"	FD-3522	"	1	"	25,000	"	"	"	"
"	"	반지름 1.7cm	"	5	80.	72,000	중고3 요청비 2	"	"	건설행정과
"	"	30 cm	"	1	미 상	20,000	중 고	"	"	도 토 과
-0030	"	35 cm	"	2	"	40,000	"	"	"	"
-2035	"	"	"	"	"	"	"	"	"	"
-2030	"	"	"	3	미 상	57,000	"	"	"	수령기획과

분류번호	명칭	규격	단위	수량	입 년월일	장부 가액	분류 상태	회계명	비용 사유	분류소재지
4140-001 -2036	선통기		대	2	미상	36,000	중고	국민주택비특별회계	영양기 설치	주택기뢰과
"	"		"	3	81.11.10	32,560	"	일반	"	주택개발과
"	"	금성 14'	"	1	미상	19,000	"	"	"	공원과
"	"	삼성 14'	"	1	"	19,000	"	"	"	"
"	"	금성 FD-354	"	2	82. 3.31	61,000	"	"	"	민방위과
"	"	신일SIF	"	1	83. 6.30	30,000	"	"	"	"
"	"	35 cm	"	2	84. 7.31	67,000	"	"	"	비상계획과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7. 6. 11

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인

① 서울특별시조례제 2188 호

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10 조 제 2 항중 "소방서장이"를

"소방서장을 경유 시장이"로 한다.
제 1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중 "소방서장은"을 "시장은"으로 한다.

제 21 조 제 2 항중 "50%"를 "68퍼센트"로 한다.

제 23 조, 제 25 조, 제 25 조의 2 및 별표 5 중 "지방소방사 5호용"을 각각 "지방소방사 4호용"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원의 인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- ③ (대원의 신분통령에 관한 경과조치) 대원이 종전에 사용하던 신분증은 이 조례에 의한 신분증을 새로이 발급받 때까지 유효하다.

구분공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7. 6. 11

서울특별시장 임보관(인)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2189 호

서울특별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동수의 내역법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의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치)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(이하 "재해위험지구"라 한다)에 동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. 다만 동 또는 자연부락 규모에 따라 2 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 개 이상의 동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 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 3 조 (기능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
2. 하천정비, 댐, 수문, 도로, 교량

하수도, 축사 기타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

3. 재해위험 지구에 있어서의 고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조립 및 복구와 장애물 등의 제거
4. 재해상자 및 구조
5.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 복구
6. 방재와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
7. 방재의식 계몽 및 전파
8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 4 조 (조직) ① 1 개 수방단은 관장 1 인을 포함한 단원 15 인 이상 50 인 이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단원은 다음 각호의 1 역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해 재해위험 지구에 거주하는 자
2. 방재와 관계있는 기관 및 기업체 소속 직원
3.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단장은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④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, 수방단을 대표한다.

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여 부

부 및 경제반, 복구반,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각반의 두는 인원과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본부 및 경제반 : 10명내의
가.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

나. 주민대의 안내

다.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 유지

라. 주민의 통계

마.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

바. 기타 다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

2. 복구반 : 30명내의

가.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조치

나. 재해시설물의 긴급 복구

다. 각종장비 및 자재의 동원

라. 재해지구의 정리·정돈

3. 구호반 : 10명내의

가. 재해민의 식량 보급

나. 사망자,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

다. 재해발생지역의 방역 실시

라. 담요 등 구호물자 전달

마. 기타 이재민의 사후 처리

제 5 조 (수방단원에서 재의필자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미만 60세이상인 자

2. 각급학교의 학생

3. 경찰관 및 군인

4.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 6 조 (교육 및 훈련) 구청장은 동

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사이에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단원의 긴급 동원

2. 기상 및 재해의 예보 전달

3. 재해위험 지구와 관계기관과의 연락

4.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응급복구나 장애물 등의 제거

5. 고령자, 부상자, 역사자 및 표류자 등의 구조

6. 방범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

7. 방재의식의 제동 및 진파

8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 7 조 (동원절차) 동수방대책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원을 동원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해 소집통보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해야 하며,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.

단, 소집통보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마이크, 전화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고 통지서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8 조 (응소결과보고)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을 동원한 경우에 구청장은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응소결과를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서울특별시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			
제 호	동 원 교 육 공 관	원 목 원	소 집 통 보 서
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
③ 주 소			
④ 소 속			
⑤ 소집기간	19 년 월 일 시 부터 (일 시간) 월 일 시 까지		
⑥ 소집장소			
⑦ 기 타 참고사항			
19 년 월 일			
○ ○ 구 세 행정직 본부장 (인)			
----- 절 위 선 -----			
제 호	수 령 중		
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위 사람에게 대한(동원, 교육, 훈련)소집 통보서를 수령함.		
수령인	(인)	19 년	월 일

(별지 제 2 호 서식)

(○ ○ 구)

수 신 : 19
 참 조 : 발신 (인)
 계 목 : 수방단 동원 결과 보고

① 구 분		동 원 사 항			⑤ 비 고
		② 대 상 인 원	③ 동원결과	④ 비 율(%)	
누 계	⑥ 개	단/명	단/명		
당 일	⑦ 개				
⑧ 동원기간		19 년 월 일 (일간) 19 년 월 일			
⑨ 동원장소					
⑩ 동원목적					
⑪ 기 타 참고사항				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정수용토중립수조역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7년 6월 11일
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2190 호

서울특별시 하천정수용토중립수조역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하천정수용토중립수조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제1항 단서중 "100원"을 "60원"으로 한다.

제3조 표의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농지개발조합이 우수토를 점용하는 경우	100%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제7조 "구청장에게 위임"을 "구청장 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"으로 한다.

별표를 현표와 같이 한다.
부 칙

- 1)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) (농지개발조합의 목적의 차용에 대한 면제) 제3조 7호의 구상에 의하여 농지개발조합이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용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986.12.31까지 면제한다.

(별표)

정 용 토 중 립 수 조 역 기 준 표

구 분	상 정 기 준
1. 공작물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.)	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세 리한 인근 유사지 파세시가지표준액(이하 "인근지 시가지표준액"이라 한다)의 6/100
2. 토지(하천부지)의 점용	가.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)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/100 또는 인근지 시가지표준액의 5/100 중 저렴한 금액 2)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지표준액의 5/100

구 분	산 정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나. 식물의 개식을 목적으로 하는 정용 연간 정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/100. 다만, '76.8.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발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제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예 다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다. 풍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용 연간 정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/100. 다만, 하천구역내의 토석,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7항의 요건을 가산한다.</p> <p>라.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용 연간 정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.5/100</p> <p>마. 관토등 배설을 위한 정용 연간 정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/100</p> <p>바. 야적장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정용 연간 정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/100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하천부속물의 정용	제 1항에 준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유수의 정용	<p>가. 전기사업 연간액 $\text{㎥} / \text{sec}$ 당 100,000 원 또는 이혼마력당 200 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</p> <p>나. 공업용수 (과력발전용을 위한 인수 포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62 789 725 1079"> <tr> <td>판정</td> <td>25% 이하 월액</td> <td>5,000 원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50 " 까지</td> <td>2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70 " "</td> <td>3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100 " "</td> <td>5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200 " "</td> <td>6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300 " "</td> <td>8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400 " "</td> <td>11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500 " "</td> <td>14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600 " "</td> <td>19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700 " "</td> <td>250,000 "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800 " "</td> <td>300,000 "</td> </tr> </table> <p>자연취수 및 801% 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상정하여 1,000 ㎥ 당 100 원씩 적용</p>	판정	25% 이하 월액	5,000 원	"	50 " 까지	20,000 "	"	70 " "	30,000 "	"	100 " "	50,000 "	"	200 " "	60,000 "	"	300 " "	80,000 "	"	400 " "	110,000 "	"	500 " "	140,000 "	"	600 " "	190,000 "	"	700 " "	250,000 "	"	800 " "	300,000 "
판정	25% 이하 월액	5,000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50 " 까지	2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70 " "	3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100 " "	5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200 " "	6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300 " "	8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400 " "	11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500 " "	14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600 " "	19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700 " "	25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800 " "	300,000 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산 정 기 준		
	<p>* 동일일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할 경우 점용로등은 한번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 기준해당 검 용료등 적용</p> <p>다. 농업용수 0.05 ~ 0.5 m/sec 까지 연간액 10,000 원 0.5 m/sec 증가시마다 10,000 원 가산</p> <p>라. 선박의 운항 (1) 도선 및 5톤이하 경기여객선 (차량 도선은 백액) 갑지 : 월액 10,000 원 을지 : " 5,000 " 병지 : " 3,000 " 5톤초과 여객선은 5톤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반액을 가산</p> <p>(2) 5톤이하 유선</p>		
	지역등급	동 력 선	무 동 력 선
	갑 지	월액 50,000 원	월액 25,000 원
	을 지	월액 30,000 원	월액 15,000 원
	병 지	월액 10,000 원	월액 5,000 원
	<p>* 5톤초과 유선은 1톤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1/10을 가산하며,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.</p> <p>(3) 부선 (유선장을 제외) 및 골재수송선 50톤 이하 월액 23,000 원 50톤 초과 ~ 100톤 " 25,000 " 100톤 " ~ 200톤 " 35,000 " 200톤 " ~ 300톤 " 45,000 " 300톤 " ~ 400톤 " 55,000 " 400톤 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8,000 원씩 가산</p> <p>(4) 제(1)부 및 제(2)부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.</p>		

구 분	산 정 기 준
5. 지하의 용수 채취	제 4 항의 기준에 준한다.
6. 배수 (주수)	<p>가. 농업용수의 배수</p> <p>월 10,000 m³ ~ 200,000 m³ 까지 월액 20,000 원 월 1,000 m³ 증가시 마다 50 원 가산 * 월 10,000 m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나. 기타 용수의 배수</p> <p>기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제 10 호에 해당될 때 다만, 농업용수와 일반법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 (주수)는 제외한다.</p> <p>월 10,000 m³ ~ 200,000 m³ 까지 월액 15,000 원 월 1,000 m³ 증가시 마다 50 원 가산 * 월 10,000 m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
7. 토석, 사력의 채취	<p>가. 서울특별시외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 사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/100</p> <p>나. 가호의 조사는 공신력있는 2개이상의 조사기관에 의하여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년도의 채굴할 지역별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이하로 금액 조정할 수 있다.</p>
8. 곡목, 잔대, 목초 및 기타 하천 산 물물의 채취	<p>○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 7 항, 점용이 수 반되는 것은 제 2 항에 준하여 결정한다.</p>
9. 스케이트장, 유선장 (유선의 모선물 포 함한다) 운동장, 풀장 대기장, 발외장 (매점 포함)	<p>○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/100 다만, 제외처등 인 근지 등 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 등급이상 적 용할 수 있다.</p>
10. 전 주	○ 제 1 항에 준한다.
11. 기타의 점용 및 사용	○ 전 지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

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
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년 6월 11일
서울특별시장 임보현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2181 호

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
시행규칙을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

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장학금의 지급)중 "새마을
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회
장 명의"을 "서울특별시장과 새
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회
장 공동명의"로 하고 제6조시식
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(제6호시식)

장 학 증 서

학교 학년 성
○ ○ ○

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○ ○ 학년도
새마을 ○ ○ ○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여 장학금을 지급함.

1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○ ○ ○ 직인

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회장 ○ ○ ○ 직인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8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0 호(87. 5.22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봉원동산 3-8

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6.11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학 교	서대문구 봉원동산 3-8 일대	13,871	
변경	학 교	서대문구 봉원동산 3-8 일대	0	계 지

나. 지적승인도면: 별첨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0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8 호(87. 5.7)로 변경 결정된 다음 도시 계획시설(학교)를 도시계획법 제

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 6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규모(㎡)	비고
기정	학 교	구로구 시흥동 218-6 일대		11,139	
변경	"	"		10,946	감 193 ㎡

나. 별첨 도면포시의 같은(도면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76 호

도시계획(안)공람

1. 서울특별시 도봉구쌍문동산 75번
지일대 도시계획시설(공원 일부회
재 및 학교신설)입안에 따른 도
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 16조의2

및 동업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장
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
아래 장소에서 일반인에게 보인다.
2. 도시계획안역 내안 의견이 있을때
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
소에 제출하기 바란다.

1987.6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기간: 87. 6.12 ~ 87.6.26
나. 공람장소: 도봉구청도시정비과

○ 도시계획안

시설명(구분)	위 치	면적(㎡)	입안사항	비 고
공원변경	도봉구 쌍문동산 27 일대	54,702	해 제	쌍문군권 공 원
학 교	"	54,365	신 설	

* 도면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77 호

제 2 종 전기공사면허실출공고

전기공사법 제 30 조 제 5 호 규정

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
면허가 실효되었기 동법제 42 조 규
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7. 6.11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실효내역

면허번호	업 복 명	대표자	소재지	실효일자	사 유
979	두일산업(株)	이창훈	강남구역삼동 843-7	87.5.8	전기공사법 제 30 조 제 5 호 (공사업 과전제 지)

구 공 고

◎도봉구공고제 237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내소극장)완료

1. 도봉구고시 제 139 호(87.4.23)로 변경사정허가된 도봉구 창동 581-28 도시계획사업 (시장내소극장)이 완료되었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제 85 조 규정에 의한다. 변경내용

여 약래와 같이 공고한다.
2. 관내도사는 도봉구청 상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7. 6. 11.

도 봉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도봉구창동581-28

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
(시장내소극장)

명칭: 3층 일부용도변경
(약래 변경과용 참조)

구 분	당 초		변 경		비 고
	면 적	용 도	면 적	용 도	
3 층 용도변경	1,576.4㎡	판매장	196 ㎡	관람정희시설	지하 1, 2, 4층 은 변경없음.
			1,380.4㎡	판 매 장	

라. 사업시행자: 도봉구청동581-28
㈜삼익쇼핑대표이사 김홍원

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관입규
칙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공고한다.

◎강남구공고제 86 호

관 인 재 표 부 공 고

관입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
관입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신
조계자 및 세입된 관입을 관입규

1987. 6. 11

강 남 구 청 장

1. 관입사용 게시일: 1987. 6월 22일
09:00
2. 신규 사용일

인 영	신 구	복 기	
			
공인명	학동장 (민원사무전용) 직인 및 기인		
인 영	신 구	복 기	
			
공인명	의삼재 1 동장 (민원사무전용) 직인 및 직인		
인 영	신 구	복 기	
			
공인명	서로재 1 동장 (민원사무전용) 직인 및 직인		

인	신	규	계	기
				
공인명	방백계 1 동장 (민원사무전용) 직인 및 계인			
인	신	규	계	기
				
공인명	도곡동장 (민원사무전용) 직인 및 계인			
인	신	규	계	기
				
공인명	내곡동장 (민원사무전용) 직인 및 계인			

사 형

- ◎ 1987.5.5 일자 형제 175호
 수도권지사 사무소
 지방행정서기보 이 경 구
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
 결정 (소청 87-30 '87.5.29)에 따라
 '86.11.28 일자' 정직 3월 처분을 동일자
 "정직 1월"로 변경 처분함.
- ◎ 1987.6.2 일자 형제 180호
 지방토목기과 김 정 근
 토목기과에 임함
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국
 토목과장에 포함. 대 통 령
- 토목기과 강 인 수
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
 진출을 명함. 대 통 령
 서대문구근무를 명함. 서울특별시장
- ◎ 1987.6.8 일자 형제 181호
 산업경제국 양성과
 농림기사 용 환 운
 종합운동장 파견근무를 결함
 ('87.6.8-'87.12.31)
- ◎ 1987.6.3 일자 형제 182호
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운영과장
 서기관 신 중 식
 지방서기관에 임함. 대 통 령
 시험운동장장에 포함. 서울특별시장
- ◎ 1987.6.11 일자 형제 183호
 중 구
 지방행정주사보 유 의 덕
 행정주사보에 임함.
 중 구
 행정주사보 박 장 어
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. 서울특별시장
- 공무원의여편명명동보

여 령 자				목 격	여령국	기 간	경 비
소 속	직위 (직급)	성 명					
보건사회국	보건위생과장 (서기관)	김인수	선진경제장시설 실패 와 운영관리자료수집	미 국 일 본	87.6.8 -6.17 (10일간)	시 비	
1987. 6. 8.							서울특별시장